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시험 업무처리 지침

(재)FITI시험연구원

1. 적용범위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판매금지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고객이 의뢰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시험의 접수부터 발급까지 원활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절차

2.1 시료의 접수, 운반 및 수령

2.1.1 기술책임자는 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에서 봉인한 주방용오물분쇄기(이하 '제품')에 대한 확인 및 검토하여 접수자에게 인계한다.

2.1.2 접수담당자는 협회에서 발급한 제품시험의뢰서를 확인하고 봉인된 제품과 제품 시험의뢰서와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한다.

2.1.3 접수담당자는 시험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뢰내용을 기록하여 시험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의뢰자와 함께 제품을 설치한다.

2.1.4 시험신청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4.1 접수번호

2.1.4.2 시험방법, 목적, 시험방법(제품시험의뢰서로 갈음 할 수 있다.)

2.1.4.3 시험의뢰자, 명칭 및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사본) 등

2.1.4.4 시험개시 및 종료예정일

2.1.4.5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시험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2.1.4.6 시험책임자의 서명날인

2.1.4.7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2 제품시험

5.2.1 시험담당자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방법 및 절차 장비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고객에게 신뢰감을 제공하여야 한다.

5.2.2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판매 금지 고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5.2.3 시험시 최신 고시를 따른다.

2.3 보고서의 작성

2.3.1 2.2항의 제품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송부하며, 시험에 사용하였던 시험 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3.2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2.1 접수번호

2.3.2.2 시험목적

2.3.2.3 시험항목

2.3.2.4 시험기간

2.3.2.5 시 료 명

2.3.2.6 시험의뢰자

2.3.2.7 시험기관

2.3.2.8 시험결과

2.3.2.9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제품의 보관 및 처리

시험이 끝난 제품에 대하여 협회에 통보가 끝난 시점으로 부터 7일간 시험실에 보관하며 이후 폐기한다. 단, 의뢰자의 요구가 있을시 의뢰자에게 반납한다.

4. 제품시험 수수료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도 운영요강에 따르며, 시험수수료는 [표 2]과 같다.

항 목	내용
제품시험수수료 (부가세 별도)	○ 고시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방식 : 150만원 ○ 고시 제8조제2항제3호 방식 : 250만원

※ 운영요강 및 고시에 따른 수수료 변동가능

5. 시험업무 Flow chart

